

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
폐지조례안

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길영 의원

존경하는 선배·동료위원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?
강남구 제6선거구 김길영 의원입니다.

존경하는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」에 대해 직접 참석하여 설명드려야 하나 서면으로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.

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지난 3월 29일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」은 대북 인도협력 사업은 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과 「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」에 의해 주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. 또한 대북지원사업자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

있는 근거가 해당 법률에 이미 마련되어 있어 정부 방침에 따라 서울수도 남북교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바 「서울특별시 대북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조례」가 대북협력사업에 대해 규정하는 것은 중복된 사안이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,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